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 추가(안 제83조의5제19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9. ~ 8. 18.)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의 현장조사 업무(사고원인과 관련한 도로의 상황, 사고흔적 등 사고현장을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 -----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u>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u> <u>회사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등</u> <u>의 위탁을 받은 사업주로부터</u> <u>업무를 의뢰받아 같은 법에</u> <u>따른 자동차사고의 현장조사</u> <u>업무(사고원인과 관련한 도로</u> <u>의 상황, 사고흔적 등 사고현</u> <u>장을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u> <u>다)를 하는 사람</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4